



유네스코의 공식 파트너, NGO가 되는 것

유네스코는 그 사명을 추구하고 사업을 이행하고자 세계 전역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협력 관계와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

파트너십의 기본 원칙

모든 파트너십을 수립함에 있어 유네스코는 다음의 원칙들을 따른다:

- ▶ 어떤 파트너십이라도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 ▶ 파트너십에서 파트너들은 평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 ▶ 파트너들은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각 당사자의 책임, 역할과 기여는 명료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 당사자 양측이 투명성의 자세로 업무 관계의 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 어떤 파트너에게도 불공정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는다.
- ▶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지속기간을 넘어서도 지속가능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행동지향적이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다음의 주체(entities)와는 협력하지 않는다:

- ▶ 조직의 권한과 충돌하거나 유네스코의 활동과 평판을 저해하는 재화, 용역 혹은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주체
- ▶ 인권 침해에 연루되거나, 강제 노동 혹은 아동노동을 용인하는 주체
- ▶ 대인(對人)지뢰나 집속탄의 판매나 생산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유엔이 요구하는 관련 의무나 책임을 충족시키지 않는 주체
-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제재를 위반하는 주체

NGO와의 파트너십

유네스코는 시민권의 열망과 민주적이고 공평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의 목적에 준하여, 활동에 더 큰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도모한다.

비정부기구(NGO)는, 강력한 시민 연계의 플랫폼으로서, 유네스코와 같은 정부간 조직에게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들은 정부간 조직의 전문분야와 비교우위에 관하여 자원을 집중시키고, 글로벌 활동을 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것을 지역적인 것과 연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전문 지식과 자원을 NGO들과 결합하는 것은 조직으로 하여금 다음을 가능하게 한다:

- ▶ 전략적 제휴를 창출한다.
- ▶ 프로그램/활동 실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향상시킨다.
- ▶ 조직의 활동과 존재감의 가시성과 영향을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강화한다.
- ▶ 조직의 규범적 프레임워크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 조직의 활동의 수혜자여야 하는, 사회의 모든 부분에 닿도록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 ▶ 유네스코의 활동의 효과를 크게 증대시킨다.

NGO와의 파트너십을 위한 법정 프레임워크

NGO와의 협력에 대한 현재의 법정 프레임워크는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의 비정부기구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신(新) 지침 (the new Directives concerning UNESCO's partnership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에 규정되어 있다 (36 C/Res. 108).

이러한 지침은 파트너십의 참여, 관리와 유지를 위한 단순화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는 다음을 가능하게 한다:

- ▶ 글로벌 그리고 지역적 단위에서 모두,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NGO와의 파트너십을 더 통합시킨다.
- ▶ 조직 내에서 NGO와의 파트너십의 진정한 문화를 촉진시킨다.
- ▶ 유네스코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NGO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갱신하며 넓힌다.
- ▶ 역사적, 문화적 혹은 지리적인 이유로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조직들이 고립되거나 약한 세계의 지역에서, 그러한 새로운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촉진시킨다.

공식 파트너십의 종류

NGO와는 두 카테고리의 파트너십이 구축 가능하다:

- **자문 파트너십(consultative partnership):** 유네스코로 하여금 유네스코의 역량 분야에 어떠한 수준으로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유연하고 역동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 **연계 파트너십(associate partnership):** 유네스코로 하여금 유네스코와 최소 2년 동안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국제 혹은 지역 단체에게 개방하도록 설계되었다.

누가 공식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목적, 기능, 구조와 운영이 비정부적이고, 민주적이며 비영리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그 어떠한 **국제, 지역, 국가 또는 현지 NGO**도 공식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NGO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협력, 관용, 연대의 태도로, 인류를 위해,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유네스코 역량 분야 1개 이상의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 공인된 법적 지위와 설립된 본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채택된 규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 파트너십의 수립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2년 이상 존재하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어야 한다.

왜 공식 파트너 NGO가 되어야 하는가?

유네스코와의 공식 파트너십은 단순한 승인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조직의 역량 분야에서 협력하고 함께 일하기 위한 상호 참여에 있다.

✓ 더 지속되는 협력

프로그램 실행에 NGO의 참여는 꼭 조직과의 공식 파트너십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유네스코의 역량 분야 한 개 혹은 그 이상에 대한 그들의 전문 지식에 의존한다. 그러나 **공식 파트너십은 조직과의 협력을 구축함에 있어서 특권을 가지는 길이다.**

공식 파트너십 준비에는 협력의 집단적 양상과 더불어 협력의 양자적 양상이 있다.

양자 협력은 본질적으로 주제와 관련이 있고 활동의 다양한 기능적 분야에 개입할 수 있다 (e.g.

역량 강화, 공개적 지지, 기술적 지원, 기준 설정 등). 이것은 다양한 양상을 통하여 관리된다: 유네스코 정기 프로그램의 특정 요소들의 이행, 프로젝트와 합동 계획의 실행, 협의 메커니즘 그리고 고/혹은 양해 각서 등을 통하여 구축될 수 있다.

집단 협력은 조직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NGO들만 해당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추구된다:

- ❖ 유네스코와의 협력 상태를 검토하고 유네스코 프로그램의 주요 줄기에 관한 집단적 협의를 하고자 (유네스코 본부 혹은 어느 회원국에서든) 2년마다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모든 NGO를 모으는 **NGO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GOs)**;
- ❖ NGO 국제회의에서 선출되며 유네스코와 관련하여 모든 NGO 파트너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NGO-유네스코 연락 위원회 (NGO-UNESCO Liaison Committee)**;
- ❖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실행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획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집단적 협의
- ❖ 모든 NGO 공식 파트너들의 참여를 초청하는 집행이사회 **비정부적 파트너에 관한 위원회(Non-Governmental Partners)**;

덧붙여, 공식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NGO들은 **유네스코의 중단기 전략에 관한 NGO들과 협의 (C/4)와 그것의 프로그램 및 예산 초안 (C/5)의** 구체적 절차를 통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조직의 프로그래밍 주기에 공헌한다.

✓ **파트너십의 가시성과 특혜적 교환**

유네스코에게 사무국, 회원국과 NGO, 공식 파트너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과, 뉴스 미디어와 일반 대중에게 우리의 협력의 가시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항이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유네스코는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도구를 이용한다:

- ✓ 유네스코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유네스코와 공식 파트너십을 누리고 있는 NGO, 재단, 그리고 유사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 (www.unesco.org);
- ✓ 조직의 주요 활동과 행사에 관한 정보 공유와 그 세부 계획과 시행에 NGO를 더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국가 지사로 최대한 확장하고자 하는, **NGO를 구체적으로 겨냥하는 정기 월간 통신문**;
- ✓ **유네스코 웹사이트의 포럼**은 NGO들의 활동, 발행물, 그리고 파트너 단체에 관한 다른 관련 정보를 다룬다.

공식 파트너십은 양자 협력의 가시성을 향상시킨다:

- ✓ 정보와 홍보 목적으로, 공식 파트너 NGO는 유네스코와의 파트너십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로고 옆에 기준 문장을 사용하도록 요청한다: « **[NGO]는**

유네스코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자문 지위 혹은 연계 지위) ».

- ✓ NGO들은 임시로 다음과 관련하여 유네스코의 명칭, 약자 및 로고의 사용과 관련된 유네스코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 NGO가 계획하는 행사에 대한 유네스코의 **후원**,
 - ❖ 유네스코와 협력하는, 혹은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이행**.

어떻게 공식 파트너 NGO가 되는가?

사무총장은 유네스코와 공식 파트너십(자문 지위)의 수립을 결정한다. 이러한 파트너십 요청은 **NGO가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NGO에 관한 완전한 문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다.

요청은 다음의 고려 사항에 따른 **내부평가를 거쳐 처리된다**:

- **엄격한** 가입 절차:
 - ❖ 누구의 자문을 구하는가?
 - 유네스코의 모든 섹터와 용역을 비롯하여 관련 지역사무소, 그리고 필요 시, 법률실(Office of Legal Affairs);
 - 국가적이나 지역적인 범위의 NGO를 위한 관련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 ❖ 어떠한 평가기준을 따르는가?
 - 분야에서 NGO의 실제 영향력;
 - 미래 협력과 시너지를 위한 잠재력;
 - 최근 NGO와 유네스코 합동으로 이행한 활동들의 규모;
 -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국제연합(UN) 체계 혹은 다른 정부 간 조직과의 기존의 협력.
- **투명한** 가입 절차: 각 요청에 대해, 자문한 다양한 용역/섹터/국에 의해 표현된 모든 의견/권고와 더불어 그것에 대한 최종 추천을 반영하는 파일이 구성된다.

* * * * *

추가 정보 문의:

비정부기구 섹션 (SECTION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대외협력공보 섹터(Sector for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Information)

UNESCO

Maison de l'UNESCO

7, Place Fontenoy

75007 Paris, France

전화: +33 1 45 68 14 98

팩스: +33 1 45 68 56 43

이메일: ngo@unesco.org

웹사이트: www.unesco.org/en/ngo